

1. 옥상에 소형저장탱크 설치가능 여부

Q.질의

o 소형저장탱크(500kg)를 옥상에 설치하여 충전구를 1층으로 시공하여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?

⚠註변

- ○「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」제2-4-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소형저 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다만 소형저장탱크를 건축물 옥상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용하는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8-26조 제5항 및 제8-31조 제3항에 따라 소형저장탱크를 건축물의 옥상, 지하주차장 상부 등 건축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, 건축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행하는 당해 건축구조물 〔소형저장탱크(내용물포함)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〕의 강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충전구를 1층으로 용접·시공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배관에 대한 비파괴시험, 방호조치(충전구 포함),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차광막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참고로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충전시 액이송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임. (인터넷 질의회신, 2005. 3. 1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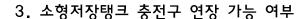
2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비용 부담 주체

Q. $\underline{\mathsf{Q}}$

- 1.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주가 되는지, 세입자가 되는지?
- 2. 시설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지,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?

A.⊒변

- 1.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관계 없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2.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다목(1)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때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. 소비설비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거나, 소비자가 부담하여설치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부담하여설치하는 경우 소비설비에 대한 설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(인터넷 질의·회신, 2005,8,24)



Q.질의

- o 소형저장탱크 2.9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과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설치방법
 -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과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충전구 배관을 이동하여 5.5m이상 유지하여도 되는지?
 - 벌크로리가 출입을 하지 못할 경우 가스충전구 배관을 연장하여도 되는지?
- ㅇ 소형저장탱크는 가스충전설비(펌프, 압축기)를 설치할 수 있는지?

A.昆변

- ○「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」제2-4-2조 제1호 가목 〈표1〉에 따라 충전질량 2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는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과 5.5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함. 다만, 문의한 바와 같이 소형저장 탱크 충전구 연장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문의하기 바람.
- ○「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」제2-4-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소형저 장탱크에 펌프 또는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탱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소형저장탱크에 펌프 또는 압축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 (인터넷 질의회신, 2006, 7, 2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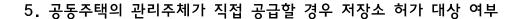
4. 기 매립 설치된 배관의 사용가능 여부

Q. $\underline{\mathsf{Q}}$

 1998년 준공되어 48세대가 체적거래방식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던 용기집합시설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 매립되어 사용 중인 배관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?

A.⊒변

- 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4 제1호다목(1)(가)에 따라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고시 제2-5-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관재료를 사용하여야 함. 다만, 같은 고시 제2-5-16-2조(보칙)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(2001. 10. 5)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배관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.
- 아 따라서 지하매몰배관(KS M 3514, KS D 3589)이 개정규정 시행일(2001. 10.5)이전에 검사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- o 아울러 문의한 시설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문 의하기 바람. (인터넷 질의회신, 2006. 12. 4)



Q. $\underline{\mathsf{Q}}$

-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o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저장소(저장량 40톤) 설치 허가를 득하여 입주자 등에게 LPG를 공급하여야 되는지?

A.답변

- o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해당하나,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은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됩니다. (인터넷 질의회신, 2008.6.3)